



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
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(국가교정제도의 확립)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9조(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항목 폐지를 공고합니다.

2011.11.8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인정 번호	기 관 명	대표자	법인등록 번호	소 재 지	사유 및 폐지분야
			고유번호		
KC01-040	전북지방 중소기업청	유지필	-	법인주소 :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1-5 사업장소재지 : (위와 같음)	- 자진반납 - 폐지분야(2개 중분류) 직류(401), 교류 및 교류전력(403)
			418-83-0 0602		

부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